DB구축과정에서 저작권보호문제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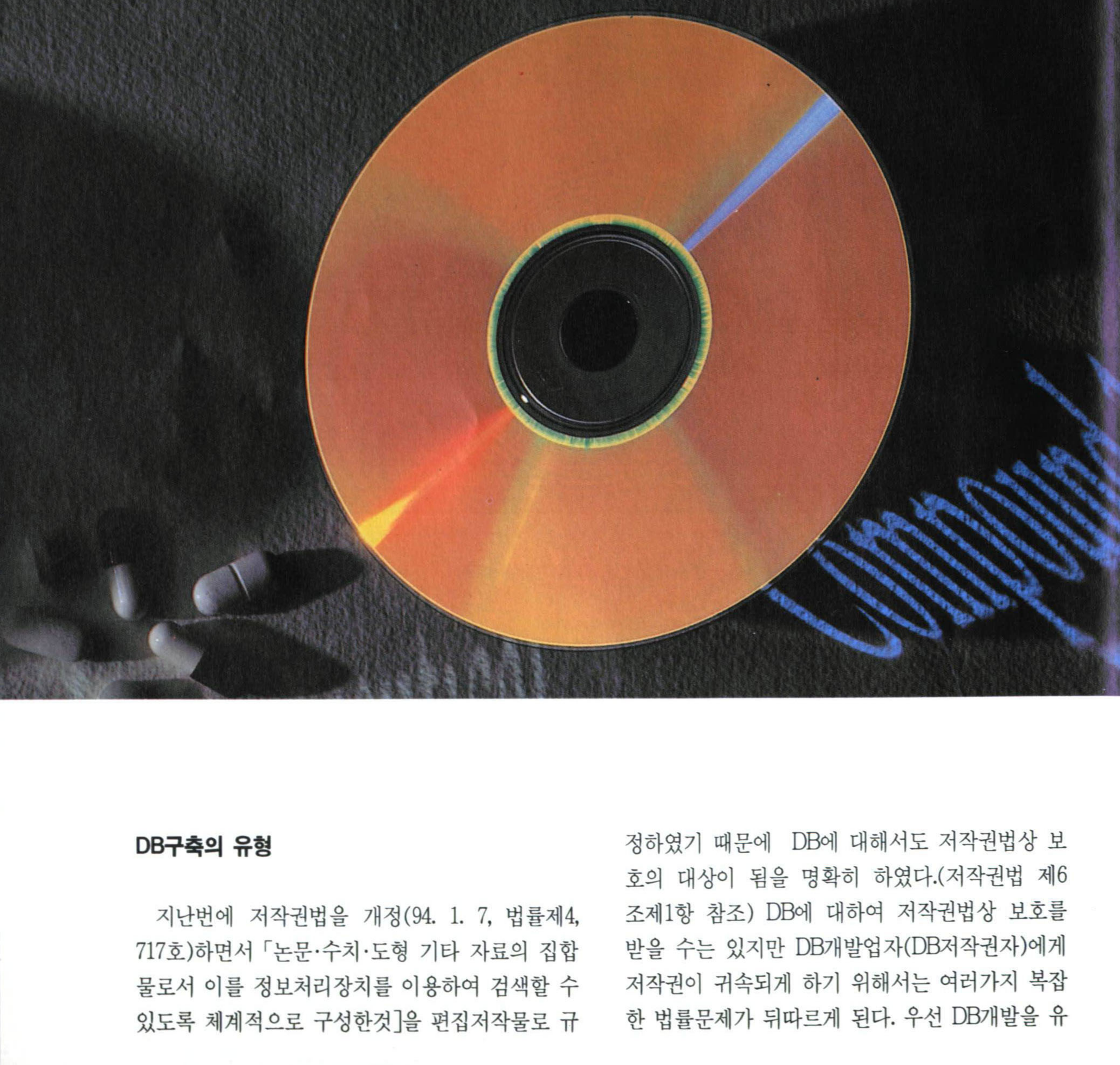

DB구축의 유형

지난번에 저작권법을 개정(94. 1. 7, 법률제4,717호)하면서 「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것]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DB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다.(저작권법 제6조제1항 참조) DB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DB개발업자(DB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우선 DB개발을 유

각종 정보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의상승
- 고도 통신 기술 응용의 잠재력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증대
- 운송 및 운송 상황 정보가 기업의 물류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 증대
- 기업간 통신 기능이 가능케 될 정도로 기업과 기관등의 전산화 여건 성숙

기업간의 거래정보 교환에 EDI를 도입하면 온라인으로 거래 문서를 전송함에 따라 기업간 정보전달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의 정확성 유지와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비용절감에 따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 EDI 도입 효과를 수/발주 측면에서 요약하면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는
- 주문 내용 입력시 오류 발생과 그에 따른 지연 제거
- 인력 및 재고 감축
- 대 고객 서비스 향상
- 영업 및 상품 흐름의 추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둘째로 구매자 측면에서는
- 재고 수준의 감축
- 빠른 주문의 확인
- 효율적인 청구 처리
-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EDI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CCITT에서는 ISO/IEC와 공동으로 1990년 3월에 개방형 시스템을 지향한 X.435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X.435의 권고안은 X.400 계열의 메시지처리 시스템(MHS; Message Handling System)을 기반으로하는 EDI 메시지시스템(EDIMS: EDI Messaging System)으로서, 기본 시스템 구성은 X.400 '88 Version의 MHS 구성과 동일하나 MHS가 비정형화된 전자우편 서비스를 목표로한 반면, EDI는 정형화된 표준 문서의 교환으 대상으로 하므로 X.435는 이러한 EDI와 관련된 메시지의 작성, 전달, 응답 등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별 기술되는 항목과 전달되는 경로 및 응답형태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88 Version X.400 권고안을 토대로 한 X.435의 EDI 메시지시스템(EDIMS) 기본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메세지처리시스템(MTS : Message Trasfer System), EDI-UA(EDI User Agent), EDI-AU(EDI Access Unit), EDI-MS(EDI Message Store)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EDI-UA는 사용자와 MTS간의 메시지의 교환에 관계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메시지의 편집, 메시지를 MTS로 전달 및 MTS로부터 받은 수신 메시지를 화일에 보관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MTS는 EDI-UA간에 축적-전송방식의 배달 서비스를 수행한다. MTS는 메시지 전달대행자(MTA : Message Transfer Agent)들로 구성되며 MTA는 중계 방식을 통해 수신측 UA와 상호 연동하는 MTA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AU는 MT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외부의 다른 통신 시스템이나 서비스와 상호 통신기능을 제공한다. EDI-MS는 EDI-UA와 MTS의 중개자로서 메시지의 저장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 EDI-MS를 통해 메시지의 배달이 가능하며 EDI-MS상에 배달, 기억된 메시지를 검색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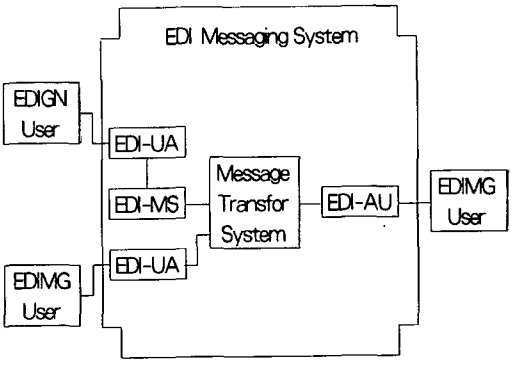

그림 1. EDI Messaging System 구성

지, 또한 특정의 논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어휘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전문을 컴퓨터에 입력시킨다음에 활용하고 번역이 완료된 즉시 말소시켰을 때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논문 등 학술정보는 전문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는 한 학술내용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93. 6. 8)도 있다.

○ 문헌목록 및 전문입력(제2유형)

앞의 제1유형이 논문 요지를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여 새로운 「편집저작물」로서 DB를 구축하는데 반하여, 제2유형은 논문을 그대로 전문(全文) 입력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 방식의 경우도 DB개발자의 창작적 노력은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논문작성자·년월일·발표문헌 기타논문 내용에 따른 편별분류 등 검색하기에 편리하도록 체계적 배열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문전문(全文)을 그대로 입력할 경우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복제권의 침해가 된다.

논문전문입력시스템(Full Text System)에 관해서는 앞에서의 제1유형의 결점 즉, 이용자가 원문(原文)을 직접 그대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저작자와 정보이용자간에 개념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또한 DB개발자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즈음은 컴퓨터 용량이 크고 기억장치가 발달되었고 광파일시스템 이용등으로 입력작업 역시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입력 방식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저작물의 복제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제2조제14호) 또한 "복제"는 원형 그대로 재제작(再製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수정증감 등 변경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동일성(同一性)이 감지되면 복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DB개발자가 월간지, 단행본등에 수록된 특정인의 논문을 수집하여 DB구축을 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로 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 예컨대 월간「K컴퓨터」에서 발간·수록한 논문(저자 김갑동)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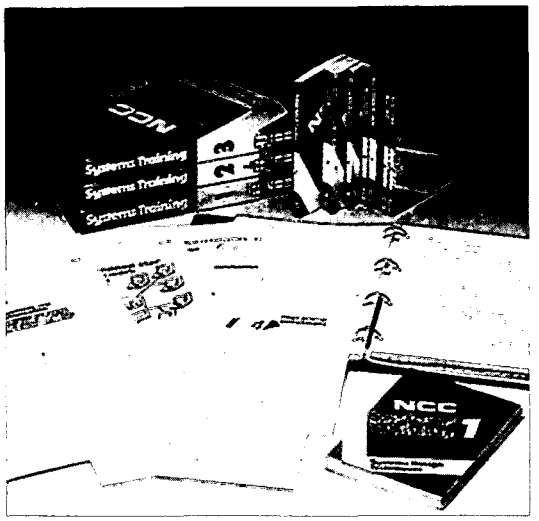

「K컴퓨터」잡지대표인 출판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작자인 김갑동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가 또는 출판권자와 저작자 두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정 논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출판권자보다는 저작권자(저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능하다면 출판권자와 저작자의 동의를 동시에 받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DB저작물의 양도문제

앞의 「백두산DB」회사에서 박갑동 사장은 논문 등 컴퓨터 관련 문헌을 DB구축함에 있어서 장기간 소요되고, 제작경비 등 운영이 곤란하여 「한라산DB」회사에 이미 구축된 DB저작물을 양도할 계획에 있다. 「백두산DB」에서는 합법적으로 논문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이미 모두 받아 놓은 상태이기때문에 마음대로 제3자인 「한라산DB」에 양

도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저작권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백두산DB」에서 사용허락을 받아서 DB를 구축하였다 하여도 이를 「한라산DB」로 양도할 경우에는 다시 원저작권자(논문저작자)의 저작물 양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도서등으로 출판은 금지하되, DB구축용으로서만 조건을 붙여 허락하는 것이며, 저작권의 양도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원권리자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양도되고 또한 다른 제3자에게 전매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저작물의 이용실태를 원저작권자는 파악할 수 없어 불의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허락을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저작권자 보호차원에서 법률로 명문화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전송문제 DB저작물 컴퓨터에 내장된 전자기록이 정보통신회선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송될때 이를 공중에 배포 제시하는 뜻으로 해석되어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에 해당된다. 즉 DB저작물의 경우는 「전송」행위가 「공표」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공표(公表)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법제2조제17호) 이 경우 DB저작물을 전체가 한꺼번에 공개(일반저작물과 같이)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DB저작물 구성 부분중 일부가 송신 또는 공개된다. 즉 부분적으로 공표된다.

이와 같이 논문전체 중 일부가 공표되었을 경우도 DB저작물 전체가 공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되며, 원저작권자의 공표권 침해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도 문제가 된다.

저작물에서 「공표권」 문제는 인격권과도 관련이 있고 매우 예민한 문제가 뒤 따른다. 논문의 경우 전문(全文)의 흐름을 보면 크게 문제될 바 없으나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공개 또는 전송될 경우 이용자로 부터 충분히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저작자는 DB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저작물이 전송되는 것을 환영하지 아니한다.

또한 저작권법상 공표시점 문제는 공표의 범위, 시기의 확정, 보상기준의 산정등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가 된다. DB저작물의 공표시점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DB개발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법적분쟁 발생시에 해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저작권법상 DB저작물의 공표에 관하여 명문화 하였다. 일본저작권법 「제4조 제4항에 공중으로 부터 요구에 응하여 유선송신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이용자 즉 공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DB저작물이 송신장치에 의하여 제시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공표로 본다. 따라서 일부 공표 또는 전부 공표의 논의가 필요없이 DB가 개발완료되어 전송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시점이 공표시점으로 보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상 일본의 경우와 같이 명문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경우처럼 DB가 구축완료되어 전송이 처음 실행된 시점(時點)을 공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DB구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문제되는 예민한 부분만 소개하였거니와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노력으로 개발한 DB가 법적으로 떳떳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법적고찰을 마쳐야 할 것이다. 완성된 DB가 저작권법, 프로그램법,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되어 법적분쟁에 휘말려 사업상 곤란을 느낀다면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기에 참고로 유의할 사항을 밝혔다. DB